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. 9. 7 선고 2022가단5249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홍

피 고 A

소송대리인 B

변 론 종 결 2022. 8. 17.

판 결 선 고 2022. 9. 7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8. 10. 1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4,363,6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74,363,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기술보증기금은 B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가단337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, 위 법원은 2007. 6. 20. ‘B은 기술보증기금에게 81,481,049원 및 그 중 81,142,849원에 대하여 2006. 6. 15.부터 2006. 9. 14.까지는 연 14%의, 그 다음 날부터 2007. 4. 10.까지는 연 16%의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’는 판결을 선고하였고,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.

원고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았고, 기술보증기금은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.1) 원고는 B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차전13778호로 B은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.

나. B의 아버지인 C가 사망하였고, C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, 자녀로 B 등 4인이 있다. 채권최고액 42,000,000원(피담보채무액은 이를 상회한다), 채무자 D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C 소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다음부터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10. 10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. 4. 3. 경료되었다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0. 7. 21. 말소되었다.

다. B은 위 2018. 10. 10. 이후로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다. 이 사건 부동산의 2022. 5. 24. 기준 시가는 451,000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4호증의 각 기재,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 취지

2. 판 단

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의 상속인들은 2018. 10. 10.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(다음부터 ‘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였고, 그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B 지분 2/9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부분은 B의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, 취소되어야 한다.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9. 4. 3. 말소되었으므로,

원상회복의 방법은 가액배상에 의하여야 한다(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7다4004 판결, 대법원 2001. 9. 4.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).

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 시가는 451,000,000원으로 추인되는데,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았던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42,000,000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, 이를 공제한 409,000,000원의 B 지분 2/11에 해당하는 금액은 74,363,636원(원 미만 버림)이고, 원고의 채권액은 이를 초과한다.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상분할협의를 위 74,363,6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위 74,363,6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차윤제

별지

목 록

1. (1동의 건물의 표시)

대구광역시 달서구 동

[도로명 주소] 대구광역시 달서구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대구광역시 달서구 대 30617.7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3층 호

철근콘크리트조 134.970㎡

(대지권의 표시)

소유권대지권 30617.7분의 68.2509

1) 갑 제2호증의 기재